

기후변화협약의 현황 및 대책

지난 10월 20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8차 특별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선진국의무를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거센압력을 받았다.

EU에서는 OECD에 가입한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고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리스트에 포함하는 안을 마련하여 이번회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개도국에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선진국의 이같은 압력에 순응하게 된다면 선진국그룹인 OECD 24개국과 동유럽 11개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으로 본지에서는 이같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편집부>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함으로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주관하에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동 협약은 설립후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8.11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 설립

▲'90.8 :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응에 관한 IPCC 종합보고서 발표

▲'90.11 : 제45차 UN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설치 의결

▲'90.12 :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설립

▲'92.5 : 제5차 INC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93.12 : 우리나라 개입

▲'94.3 : 50개국 가입후 3개월 경과로 협약 발효

▲'96.12월말 현재 165개국 가입

이 협약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체계, 기술이전, 조직사항으로 구성.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은 일반의무사항과 특별의무사항으로 대결된다.

일반의무사항(선진, 개도국 공통)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 공개,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국가전략 보고 등이며, 특별의무사항은 △협약 부속서 I 국가(OECD 24개국 및 시장경제전환국(동구권 국가)11개국)는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의무, △부속서 II 국가(OECD 24개국)는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의무를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별의무의 이행사항은 없다.

한편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현행 협약의 부속서 I 국가의 감

축의무만으로는 온난화 대처에 불충분함을 인정, 부속서 I 국가의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관한 후속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인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특별그룹(AGBM : Ad Hoc Working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하였다.

1996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하기로 하는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IPCC 제2차 평가보고서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ICPP 보고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CO_2)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다가오는 21세기말에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약 2배 수준인 500ppm에 육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 100년 동안 지구표면의 대기 평균온도가 0.3-0.6°C 상승하였고, 해수면 높이는 10-25cm 상승하였다. 따라서 향후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약 2도씨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수면은 50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이다.

앞으로 열릴 제3차 당사국 총회('97.12.1-10, 일본, 교토)에서는 AGBM 회의에서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후속의정서를 공식으로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

AGBM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후속의정서 전문 및 결문내용(서문, 용어정의, 후속의정서 당사국 회의 구성, 재정체계, 보조기구, 투표권, 가입·비준·탈퇴, 효력발생 등)과 △본문내용(온실가스 감축목표·일정·기준년도, 대상가스, 감축정책 및 조치, 배출권 거래·공동이행 등 감축의 융통성 부여방안, 감축정책 및 조치, 감축 당사국 등)으로 되어 있다.

AGBM 회의는 제1차 당사국총회 결정 이후 그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6차 회의('97.3월, 독일 본)에서 각국이 제출한 의정서안을 체계화 시켜 협상안(negotiation text)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협상안을 바탕으로 제7차 회의('97.7월 독일 본)에서 의정서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일정 및 개도국의 참여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도국간 입장이 대립되어 제8차 회의 ('97.10.22-31간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후속의정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후속의정서와 관련하여 주요국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온실가스의 감축의무 부담대상국을 OECD 국가로 구성하여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신흥 OECD 국가는 감축 대상에 포함하되 차별화가 가능토록 한다. 또한 이와더불어 2005년까지 '90년 수준의 7.5%, 2010년까지 15%를 감축하고 CO_2 , CH_4 , N_2O , SF_6 , HFC, PFC를 감축대상가스로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입장은 감축하는 의무 부담대상국을 부속서 A, B 두 그룹으로 하고 부속서 A는 기존의 선진국그룹(부속서 I), 부속서 B는 한국 등의 선발개도국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단일 감축목표년도가 아닌 중장기 감축(Budget Period)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속서 A그룹의 감축목표는 1990년으로 단일화하고, B그룹은 차별화를 가능토록하는 한편 감축대상가스는 온난화 지수가 있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도록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감축의무 부담대상국을 기존의 선진국그룹(부속서 I)으로 하고 2010년까지 '9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5%를 감축하는 것과 함께 감축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G-7 및 중국(개도국 그룹)은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은 선진국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EU와 미국의 부속서 X와 B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산유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상기금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선진국에게 국

정책 I

한되어야 하며,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EU와 미국은 수용 불가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 아래 그동안 정부부처로는 외무부, 통산부, 환경부 등이 협의하여 후속의정서 협상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보고서 작성 및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과 아울러 통산부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1차 및 제2차 보고서('94.12월, '95.12월)를 작성하여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전망, 기후변화의 경제적 분석 및 평가, 기후변화에 따르는 자연적 영향 평가,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검토 및 효과 분석, 저감 대응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97년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보고서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예상량, 감축정책 및 조치,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수록될 것이다.

한편 올 6월에 개최된 OECD 기후변화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경제현황, 주요 추진정책(에너지 절약, 청정연료 보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확립, 에너지가격정책 수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의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입장표명에 나서기도 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등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 △청정연료 사용 및 원자력 발전의 확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및 산업체 자원재활용 추진,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G-7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이와함께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위해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제어기술, 이산화탄소 고정화기술, 기후변화 예측기술 등의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 자체 추진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조사, 온실가스 모니터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정책 및 이산화탄소 흡수량 조사 등 11개 분야의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중이다.

현재 우리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나, 선진국은 과거 수백년간 경제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으므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선진국에게 국한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경제발전 단계상 향후에도 상당기간 이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의 높은 증가로 현상황에서 선진국처럼 감축기준년도나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선진국처럼 경제성장 및 에너지소비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나 선진국과 같은 의무의 부담을 겸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또다른 입장은 OECD 국가로서 우리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련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멕시코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 편입을 방지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상황, 산업구조, 에너지소비 현황,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 대책 추진현황 등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관련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 편입 거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진국과 최대한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얻어내도록 협상할 계획이다.